



찌양한 석유 드릴비트 주식 유한공사 VS 천진 리린 드릴비트 유한공사, 싱가포르 상업비밀 침해 분쟁 사건

27

01 서지 사항

| | | | |
|------------------|---|-------|-----------------|
| 국가 법원 | 중국 호북성 고급인민법원 | 사건번호 | (2009)鄂民三终字第30号 |
| 판결 일자 | 2009. 9. 30. | 판결 결과 | 조정 성립 |
| 피상소인 (원심원고) | 찌양한 석유 드릴비트 주식 유한공사 | | |
| 상소인 (원심피고) | 1. 천진 리린 드릴비트 유한공사, 2. 싱가포르 | | |
| 참조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9조 | | |
| 영업비밀 | 기술 비밀 유출 및 경업금지 관련 | | |
| 키워드 (Keyword) | 조정(调解), 상업비밀(商业秘密), 비밀보호 협의(保密协议), 주관적 고의(主观故意) | | |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찌양한 석유 드릴비트 주식 유한공사의 직원이던 싱가포르인이 원심 피고 천진 리린 드릴비트 유한 공사로 이직하여, 관련 드릴 비트 기술을 누설하여 경쟁 영업 행위를 하였다.

원심 원고 찌양한 석유 드릴비트 주식 유한공사는 원심 피고 천진 리린 드릴비트 유한 공사와 싱가포르인에게 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 승소 하였다.

피고 천진 리린 드릴비트 유한 공사가 상소를 제기하여 2심 심리 과정 중, 법원의 주도로 조정을 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고(권리자)



피고(침해자)

침해행위의 중지

기 생산된 재고품의 일정기간 판매

기술 문서의 반환, 상대방의 비밀유지 의무 불이익한 선전 금지

시장에서 침해상품을 재발견할 경우의 조치 향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 금지

손해배상청구

04 판결 요지

피고 천진 리린 드릴비트 유한 공사는 장래를 향한 상품 판매는 중지하나, 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판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타 짜양한 석유 드릴비트 주식 유한 책임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액 및 조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 등이 정해져 있다.

05 Key Point

중국의 상업비밀 관련 판례를 검색하면서 분쟁을 조정 혹은 화해로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다. 최고인민법원 발표 ‘2013년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상황’에 의하면, 2013년 전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 1심사건 평균 조정 후 철회 비율이 68.45%에 이른다고 한다.

판례를 선정하면서, 조정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법적 쟁점이나 당사자의 주장 논리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일부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본 화해 조정서는 최고인민법원 공포 2009년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10대 사건 및 최고인민법원 발표 전국 우수 조해 사례에 선정되었으며, 중국 법원 조정서의 형식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선정하였다.